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119
----------	-----

제출연월일 : 2007년 6월 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 주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함.

2. 구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

- (가칭)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행정구역·법적 지위·법 시행일 등에 대한 의견

3. 관계 법령 발췌 : 붙임

4. 의회의견 요구자료 : 붙임

관계법령 발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 (관계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05.4.27>

□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의회 의견요구

1. 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함(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5)
-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지방자치법 §4②)

2. 지방자치단체 설치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자치단체는 정부의 직할에 두고,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함
- 관할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함
- 자치단체 설치의 첫마을이 입주하는 시기(2010년)와 지방동시선거(’10.6) 등을 고려하여 2010년 7월 1일로 함

<별첨1>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지위 및 관할구역(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주요내용)

3. 의견 요구사항 및 제출서식

- 대상 자치단체 : 충청남도, 충청북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 의견제출 사항 : 자치단체 명칭, 관할구역, 법적지위 등 기타
- 제출서식 : <별첨2>
- 제출기한 : 2007. 6. 11(월)
 -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긴급안건으로 처리 요망
 - ※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참고1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참고2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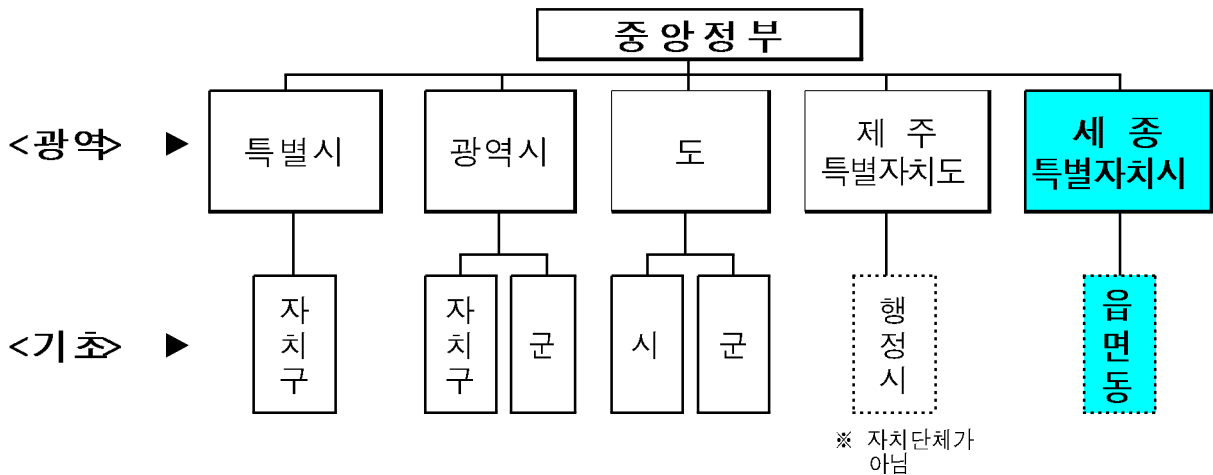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지위 및 관할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주요내용)

1. 명칭

- 지역명칭은 국민공모 실시('06.7~9)하고, '06.12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세종(世宗)으로 함
- 자치단체 명칭은 기존의 자치단체와 권한범위가 다른 점과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로 함

2. 지위

- 광역자치단체 지위로 하되 관할 아래 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두는 특별한 형태
- 기존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다른 특례 부여
예) 교육자치, 의회의원 정수,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 주민수, 지방재정 등



※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비교

구 분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근거법	지방자치법(특별자치시, 특례부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특별자치도, 특례부여)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체제	1계층	2계층(자치구,군)	1계층(행정시)
지 자 체 종 류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기능 포함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기능 포함
법적지위	정부의 직할로 설치하며, 관할구역안에 자치단체를 두지 않음	-	정부의 직할로 설치하며, 관할구역안에 자치단체를 두지 않음
행정기능	광역+기초 기능수행	광역기능수행 (자치구 사무에 대한 특례로 도보다 광역기능 強)	광역기능의 전면적 수행(기초지자체 기능 동시 수행) ※광역기능 가장 強
정 부 의 지 도 및 감 독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독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독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정부의 간섭 최소화 (자치제도에 대한 자율성 부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체감사 실시
자 치 권 위 범 위	다른 광역지자체 보다 자치권 제한 가능	현행 법령상 부여된 범위내에서 자치권 행사	특별법에 의한 각종 권한 이양 및 자율성 부여로 다른 광역지자체 보다 광범위한 자치권 부여
재 정 및 세 재	세종특별자치시세 도입 -	13개 세목 -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 (행자부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세 도입 교부세의 법정화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 (지방의회의결)
선거제도	별도 규정 예정	공직선거법 적용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도조례로 규정(자율성 부여)
각 종 행 특 례	별도 규정 예정	-	각종 특례를 통한 대폭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의료·교육·관광·청정 및 첨단산업 특례 -규제자유지역화

3. 관할구역

-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주변지역
<관할구역도>



(’06.12.31 주민등록 기준)

	예정지역	주변지역	예정 + 주변
합 계	73.14km², 9,509명 5면 33리	223.77km², 34,775명 9면 74리	296.91km², 44,284명 9면 90리
연기군 361.38km ² , 82,747명	68.24(93.3%), 8,731 3면(남·금남·동) 28리	118.62(53.0%), 20,929 4면(서) 43리	186.86(62.9%), 29,660 4면 58리
공주시 940.50km ² , 128,330명	4.9(6.7%), 778 2면(장기·반포) 5리	71.73(32.1%), 5,931 3면(의당) 20리	76.63(25.8%), 6,709 3면 21리
청원군 814.16km ² , 136,538명	-	33.42(14.9%), 7,915 2면(부용·장내) 11리	33.42(11.3%), 7,915 2면 11리

4. 시행시기

- 첫마을이 입주하는 시기(2010년)와 지방동시선거(’10.6) 등을 고려하여 2010년 7월 1일 자치단체 설치

<별첨2>

충청북도의회 의견 제출 서식

충청북도의회 의견서

1.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의견>

2. 관할구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의견>

3. 법적지위 등 기타사항

<의견>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장 (인)

< 참고1 >

법률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 및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과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제3조(관할구역) 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 공주시와 연기군 및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읍·면·동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해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해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시·도 또

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조(사무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의 관할구역에 관한 충청북도 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사무와 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감을 포함한다)·공주시장·연기군수·청원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할 사무중 구분하기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승계할 사무의 범위를 정한다.

제4조(재산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4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4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당해 법령의 관계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 참고2 >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제3조제2항 중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3조 중 "광역시에 광역시장"을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역시의 부시장"을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과 단서 중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를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로 한다.

제17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p> <p>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p> <p>2. (생략)</p> <p>②~④ (생략)</p>	<p>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p> <p>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p> <p>2. (현행과 같음)</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략)</p> <p>②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p> <p>③·④ (생략)</p>	<p>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략)</p> <p>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 -----.</p> <p>③·④ (생략)</p>
<p>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p>	<p>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 -----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 --.</p>
<p>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p>	<p>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 ----- -----.</p>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생략)
- ②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1. (생략)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

3. (생략)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생략)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